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추천할 사외이사의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4 조 (구 성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.

제 5 조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순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.
-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그 의결결과에 따라 이사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 6 조 (소 집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일 1주간전까지 추천위원에게 개최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지 아니한다.
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법령 및 정관상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.
- ②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1 조 (내부 규정의 제정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, 정관 및 이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 집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